



서울고등법원

제 16 민사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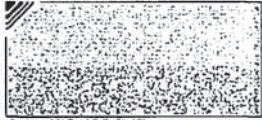
사 건

2023나20475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본조 양자음 바코드입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조회용바코드입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 피항소인

1. 김문기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김상현



3. 주식회사 세원정공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4(신당동)

대표이사 강제상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원, 백상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35791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손해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도 판지용 바코드입니다.



을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REDACTED] 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REDACTED] 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기소되었다."를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 "2019. 8. 19."을 "2019. 8. 2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세원정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김문기, 김상현이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한국거래소가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를 하였으며, 한국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적기에 개선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가 3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피고 세원정공 주식 처분이 제한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피고 세원정공이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도 양자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공상출판등록번호

입은 손해와는 별개로 주주인 원고들이 직접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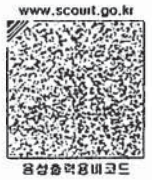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적기에 개선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개선조치를 적기에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에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9. 7. 24. 피고 세원정공 임직원의 배임 혐의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피고 세원정공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공시시한을 2019. 7. 25. 18:00까지로 하여 위 혐의 사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세원정공은 2019. 7. 24. 피고 김문기 등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히면서 혐의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나, 한국거래소는 2019. 7. 24. 피고 세원정공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지속하였다.

(2) 한국거래소는 피고 세원정공에게, 2019. 8. 14. 피고 세원정공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2019. 10. 10.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피고 세원정공에 대하여 2020. 10. 8.까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3) 한국거래소는 2020. 10. 30. 및 2021. 4. 30. 피고 세원정공의 상장적격성 및 매매거래 정지조치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속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세원정공의 상장적격성에 관한 판단을 계속 연기하였다.

(4) 피고 세원정공은 2022. 12. 19. 경영 지속성 강화를 위한 거래구조개선을 확약하면서, 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세원정공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문기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세원정공 주식 1,611,341주 및 SNI 주식 410,000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향후 손해 발생 시 질권 실행을 통해 그 손해액을 회수하겠다는 점, ② 거래구조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규차종에 대한 CKD 부품 수출업무는 SNI 등이 아니라 피고 세원정공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신설 자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엠오토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는 점, ③ 피고 세원정공 내 내부회계전담팀을 별도조직으로 신설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평가를 이원화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5) 한국거래소는 피고 세원정공으로부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받아 2022. 12. 19.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 세원정공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2022. 12. 20.부터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하였다.

(6)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피고 세원정공은 내부통제 제도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거래소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해액 확정 및 그에 대한 피해보전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성립여부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루어졌고, 장기간의 법정다툼 끝에 2021. 9. 30.이 되어서야 제1심판결이 내려졌으나 특경가법위반(배임)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로 판단되고 업무상배임의 점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유·무죄 및 피해금액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피고 김문기, 김상현으로서는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유출된 회사자금의 피해보전 등의 조치를 이 사건 매매거래 정지 이후 즉시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세원정공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23. 1. 12. 피고 김상현으로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약 838억 원 상당의 SNI 주식 보통주 39만 주를 증여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 "나)"를 "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6행 "앞서 가의 2). 나).항"을 "앞서 3.의 가. 2)항"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번도 영지용 사용도 합니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김인겸



판사

박정제

박정제



판사

김규동

김규동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4. 4. 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추인철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